2012. 12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aT

Monitoring **Export Issues of Main Countries**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유 럽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CONTENTS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CHAPTER 01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 53
Ⅰ. 관리 법률체계 ····· 53
Ⅱ. 통관수속 ····· 53
Ⅲ. 화물의 통관 ····· 54
Ⅳ. 원산지 규정 ····· 56
Ⅴ. 구비서류 ····· 59

제2절 품목별 통관제도 ····· 60
Ⅰ. 일반 포장제품 ····· 60
Ⅱ. 건강식품 ····· 62
Ⅲ. 김치 ····· 65

제3절 통관사례 ····· 66
Ⅰ. 한국식품 관련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리콜 조치 사례 ·· 66
Ⅱ. 시사점 ····· 70

통관부서 연락처 ····· 70

자료출처 ····· 71

CHAPTER 02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 79
Ⅰ. 개요 ····· 79
Ⅱ. 농수산물식품의 검역 ····· 79
Ⅲ. 검역 인증서 ····· 80
Ⅳ. 최근 검역 근황 ····· 81

제2절 품목별 검역제도 ····· 82
Ⅰ. 수산물 ····· 82

Ⅱ. 임산물 ····· 84

자료출처 ····· 86

CHAPTER 03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 91

Ⅰ. GM-free(유전자 조작 프리) 라벨링 ····· 91

Ⅱ. 영국, 새로운 식료품 라벨 시스템 발표 ····· 91

Ⅲ. 알레르기 유발 항원 표기 ····· 93

제2절 품목별 표기방법 ····· 94

Ⅰ. 의무 표시사항 ····· 94

Ⅱ. 영국, 새로운 생선 라벨링 규정 도입 ····· 96

Ⅲ. 유기농 로고 ····· 96

제3절 라벨링사례 ····· 98

Ⅰ. 통관과정에서의 문제 사례 ····· 98

Ⅱ.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사례 ····· 98

자료출처 ····· 101

CHAPTER 04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1절 10월 검역 불합격 사례 ····· 105

Ⅰ. '12년 10월 검역 불합격 사례 ····· 105

Ⅱ. '12년 11월 검역 불합격 사례 ····· 113

chapter 01

통관제도

제1절 통관제도 일반

Ⅰ. 관리 법률체계

□ 관세 고정 제도

○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Binding Tariff Information"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업자와 해당국의 관세당국이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를 6년간 고정시키는 제도가 이용되고 있음

○ HS code별로 고정적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하여 6년간 고정 관세를 고정 시킴으로써 수입업자는 관세율 등락으로 인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관세당국은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6년간 고정된 관세율은 6년 후 다시 동 기간 연장 가능함

Ⅱ. 통관수속

○ 수입업체는 물건이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고 상업용 송장, B/L, 패킹 리스트 및

기타 수입허가서(검역증명서 등)를 운송회사 또는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통관 의뢰

○ 통관 의뢰를 맡은 운송회사 또는 통관 전담 회사에서 수입 신고서 작성

○ 수입 신고서를 근거로 해당 관세를 납부 후 통관 완료 됨

○ 네덜란드로 수입된 물건들은 일단 보세창고에 단기 혹은 장기 보관되며 단기 보관용 보세창고는 운송회사나 통관 전문 업체들이 이용하며 해상운송 수입품의 경우 수입신고 후 45일, 육로나 항공 송 수입품은 20일간 보관할 수 있고, 장기 보관 보세창고의 경우 보관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음

○ 통관에는 대체로 2~3일 소요되며 통관절차의 대략적인 흐름은 아래와 같음
출항 → 입항 → 하선 (보세운송 또는 타소장치) → 물품 보세 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검사 → 수입 신고 관리 → 관세 등 제세납부

Ⅲ. 화물의 통관

1. 수입 신고서의 종류

○ T1 :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통관하는 경우 사용
제 3국(유럽연합 회원국 포함)에 수출하는 경우 마지막 인수자가 해당국에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또는 통관을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한 후 제3국에 운송하는 경우에도T1 수입신고서 작성함

○ T2 : 관세를 부담하고 통관하는 경우 모두 이 양식을 사용함

2. 온라인 통관제도

○ 유럽 연합 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제 3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을 위하여 온라인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수입업자는 세관당국에 온라인 통관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취득한 후 세관이

제공하는 하드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직접 또는 통관업자를 통해 온라인 통관신청 가능

3.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EU에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상품이 수입되었을 때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원칙적으로 수입상품일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토록 규정

○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은 아래와 같음

▌유럽연합 국가의 부가가치세율('12.7)▐

(단위 : %)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벨기에	21	6 / 12
불가리아	20	9
체코	20	14
덴마크	25	
독일	19	7
에스토니아	20	9
그리스	23	6.5 / 13
스페인	18	8
프랑스	19.6	5.5 / 7
아일랜드	23	9 / 13.5
이태리	21	10
사이프러스	17	5 / 8
라트비아	21	12
리투아니아	21	5 / 9
룩셈부르크	15	6 / 12
헝가리	27	5 / 18
몰타	18	5 / 7
네덜란드	21	6
오스트리아	20	10

국가명	표준부가가치세율	감면부가가치세율
폴란드	23	5 / 8
포르투갈	23	6 / 13
루마니아	24	5 / 9
슬로베니아	20	8.5
슬로바키아	20	10
핀란드	23	9 / 13
스웨덴	25	6 / 12
영국	20	5

Ⅳ. 원산지 규정

1. 개요

○ 한 – EU FTA 협정에 따라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협정상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면 이러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는 FTA 활용을 위해 필수적임

○ 특히 한 – EU FTA 의 경우 품목별로 각각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이 취급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원재료 조달방식이나 해외가공 공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인증 수출자

○ 6,000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27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세관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의 지정을 받아야 원산지신고가 가능함

○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지 않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EU 수입 통관 시점 2년내에 인증 수출자로 지정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특혜 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음

3. 원산지 결정기준

○ 원산지 결정기준이라 함은 특정물품이 원산지 물품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의미 함

○ 통상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과 실질변형기준(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으로 구분하고 있음

○ 당해 물품이 어느 한 국가에서 완전히 생산된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는 실질변형기준을 적용 함

○ 또한 위와 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직접운송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됨

□ 완전생산기준

○ 완전생산기준은 어느 한 국가에서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경우, 이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농수산물, 광업제품 등 1차사업품이 주로 해당 됨

▌완전 생산 기준▐

구 분	내 용
광물성 생산품	당사국 영역의 토양 또는 해저로부터 추출
식물성 생산품	당사국 내에서 재배되고 수확
산 동물	당사국 내에서 출생되고 사육
수렵·어로·양식 생산품	– 당사국 영역에서 어로, 양식 등으로 획득한 상품 – 당사국 영역에서 당사자의 선박에 의한 어로로 획득한 상품과 배타적으로 상품만 이용한 가공선박에서 생산된 제품

□ 실질변형기준

○ 세번 변경 기준

– 당해 제품의 품목번호와 당해 제품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가 일정단위 이상 변경된 경우 당해 제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

정하는 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6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사용되며 2단위 세번변경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보다 많은 가공 등을 하여야 함으로 요건 충족이 용이하지 않음
  (예 : 미삼 (HS 12류) → 인삼액기스TM (HS 13류) / 2단위 "류"가 변경)
- 한편, 불인정공정만 수행된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여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원산지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에는 원산지 확인이 불필요 함

○ 부가가치기준

- 비 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서 한-EU FTA에서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허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사용비율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공장도가격은 최종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 다만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함

▌부가 가치 기준▐

구 분	내 용
제품 기준 가격	EX-Works (공장도 가격)
계산 공식	비원산지재료 가격 / 제품의 공장도 가격 x 100

○ 한 -EU FTA에서는 그동안 EU 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서 견지해 온 엄격한 결합기준 원칙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동시 충족) 대신에 많은 품목에 대해서 처음으로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만 충족)을 채택함

Ⅴ. 구비서류

1. 수입 통관 필요 서류

○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원산지 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 가 구비되어야 함

○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 수입 라이센스, 산 동물이나 육류등에는 검역 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등이 첨부 되어야 함

○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해당 식품의 관세분류번호 (TARIC CODE = HS CODE / EU 관세 분류 번호) 가 기재되어야 함

○ 운송회사 혹은 통관을 전담하는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 등은 전담 업체에서 준비함

2. 금액별 (6,000유로 기준) 문안

□ 6,000 유로 이하인 경우

○ 판매가가 6,000 유로 이하인 경우 협정 세율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 아래 '원산지 신고서 문안'과 수출자의 서명이 추가된 FTA 인보이스가 필요함

○ 원산지 신고서 문안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s(customs authorization none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 PLACE AND DATE
- EXPORTER SIGNATURE AND NAME
- (1) 해당 국가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 기재하며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빈칸으로 남겨둠

– (2)원산지 입력

□ 6,000유로 이상인 경우

○ 수출국가에서 인증한 수출자로부터 승인을 받고 수출자 관리번호와 함께 위 원산지 신고서 문안과 서명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제출

제 2 절 품목별 통관제도

Ⅰ. 일반 포장제품

1. 통관 구비서류

○ 일반 포장제품 통관시에도 선하증권 (B/L), 인보이스 (Invoice), 포장명세서 (Packing List)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경우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을 준비해야 함

○ 수입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2. 물품 검사

○ 세관에서는 화물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 함

○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하며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 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함

○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 (excise), 부가가치세는 통관 절차 때 지불

○ 대부분의 수입상들은 통관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담당부서나 전문 통관 업

체에 위임 함

3. 통관 시 적용되는 기준

□ 상품분류 번호

○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 됨

○ EU 27개 회원국은 모두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 (CN CODE)가 적용 됨

○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으며,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함

○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함

□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함

○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임

□ 관세부과액

○ 상품의 실질 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 됨

○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연구 개발비 등) 들도 있음

○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와 일부 특정 제품 (담배, 주류, 석유 등) 의 경우에는 특별세 (excise) 가 부과됨

Ⅱ. 건강식품

1. EU, 건강식품과 관련된 카피문구 규제화

□ **EU는 올해 12월부터 건강식품과 관련 식품 라벨이나 광고, 홍보물에 집행위가 승인한 카피문구만 사용하도록 정하여 유럽에 진출하려는 한국식품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최근(5월 16일) EU 집행위는 건강식품의 라벨과 광고 선전에 사용할 수 있는 카피문구(222개) 관련 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하고 리스트에 없는 문구의 사용을 금지함

○ EU가 건강식품 관련법(1924/2006)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건강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과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자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카피문구 리스트(포지티브 리스트)를 채택함(1924/2006법에는 집행위가 포지티브 리스트를 마련하도록 명시됐음)

○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이유는 첫째 2008년에 유럽 식품청(European Food Autority)이 각 회원국에서 접수한 카피문구가 4만4000개나 돼, 이를 일차적으로 추린 후 4600개의 합당성을 심층 평가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 데다가 EU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의 토론 과정에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음

○ 식품업체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222개의 카피문구를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사용될 수 있음

2.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카피문구 내용

□ **카피문구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나 물질이 인체 성장발육과 발달, 일정한 인체 기관의 기능에 작용하는 역할**

□ **심리적 또는 행동심리적면에서의 기능**

□ **살 빼는 기능, 체중조절기능, 배고픔을 약화시키는 기능, 포만감 강화 또는 섭취 열량 감소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그러한 사실들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학적 입증에 근거를 두며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들임**

□ **포지티브 리스트에 등록된 카피문구 예**

○ 칼슘은 뼈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

○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면 콜레스테롤의 정상수준 유지에 좋다

○ 소금섭취를 줄이면 정상적 혈압 유지에 좋다

○ 식물스테롤(plant sterols)과 식물스타놀(plant stanols)는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준 유지에 좋다(이 두 식물은 마가린과 야구르트에 사용됨)

○ 호두는 혈관의 신축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 오메가3 알파 리노레닉산은 혈액의 정상적 콜레스테롤 수준 유지에 도움을 준다

○ 비타민 D는 뼈 건강 유지에 좋다

○ 비타민 C는 정상적 신경 기능에 좋다 등임

3. 건강식품과 관련된 카피문구 규제

□ **정확성이 결여되고 애매모호하며 소비자에게 잘못 인식하도록 만들거나 허위 내용이나 의학적 효과를 준다는 내용의 카피문구사용은 금지됨**

□ **금지된 카피문구의 예**

○ 그린 티(녹차)는 정상 혈압유지를 도와준다
(Green tea helps maintain normal blood pressure)

○ 로얄 젤리는 면역성, 원기향상에 좋다
(Royal jelly benefits the immune and/or vitality).

○ 비타민과 미네랄과 혼합된 타우린(활력음료수에 함유)은 정신건강에 좋다

(Taurine, when combined with vitamins and minerals, boosts mental performance)

○ 글루코사민은 관절 건강에 좋다
(Glucosamine helps maintain joints) 등임

4.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는 카피문구를 라벨이나 광고와 홍보에 사용하려는 업체는 집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절차는 아래와 같음

□ 신청서 제출

○ 업체는 해당 판매시장 회원국 당국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 벨기에 식품안전검사기관AFSCA) 에 과학적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회원국 당국은 2주 내로 EU 식품청에 신청 건을 통보

○ EU 식품청은 이를 여타 회원국과 집행위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함

○ 집행위는 EU식품청의 의견을 조회한 후 특히 중소기업에는 승인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평가서류 준비와 관련 조언과 기술적 방법을 제시함

□ 유럽식품청은 유효한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5개월 내로 집행위에 의견을 제시함

□ 신청서 제출집행위는 유럽식품청의 의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집행위 결정 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채택되면 즉시 신청자에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발표함
(기존 포지티브리스트에 승인받은 리스트 추가)

□ 유럽식품청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집행위는 이를 신청자에 통보함

□ 신청서 기재 사항

○ 신청자명, 주소

○ 신청 대상의 영양소 또는 물질, 또는 식품, 식품 카테고리와 특성 서술

○ 업체 자체 연구결과 사본

○ 업체가 카피문구에 대한 독점 소유권을 원할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동반 제출

○ 건강에 좋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외부 연구 결과 사본

○ 카피문구제안과 필요시 특별 사용 조건

○ 신청이유 요약 등임

5. 시사점

□ **EU 회원국은 이 규정이 잘 이행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 식품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 (수입 유통업자 포함)에게 건강식품 판매 시 이를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카피문구가 기재된 라벨 샘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유럽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 업계는 라벨의 카피문구가 포지티브리스트에 등록된 것인지 확인하고 비등록된 것인 경우에는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해 집행위의 허가를 받은 후 진출을 시도해야 할 것임**

□ **포지티브 리스트와 관련 카피문구와 사용조건에 관한 집행위 사이트 http://ec.europa.eu/nuhclaims/에서 참조할 수 있음**

Ⅲ. 김치

1. 원산지 규정

○ 김치 수출시 FTA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김치의 주원료인 배추, 무, 고추, 마늘 등의 채소류가 모두 국내에서 완전 생산 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됨

○ 김치 주재료의 HS(품목분류) 코드를 확인하여 기재하여야 함

2.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표기 강화 요망

○ EU는 인체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Allergen)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 건강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표기(Labelling) 법규를 적용

○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반드시 라벨을 표기해야 함

○ The Food and Drug Regulations에 따르면 성분 대부분은 차지하는 비율 순서로 포장 라벨에 기록돼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소량이라도 반드시 표기돼야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유 사실을 누락한 식품에 대해서는 경고와 리콜조치가 적용됨

○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 미 표기로 인한 리콜의 예 (2011년 9월)

- 2011년 9월 CFIA는 D사의 J 브랜드 한국산 김치 3종에 대해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김치 제품이 육젓(Fish), 새우, 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표기(Labelling)하지 않아 해당 제품 전량 리콜 조치 됨

제 3 절 통관사례

Ⅰ. 한국식품 관련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리콜 조치 사례

1. 인삼가루 (2012년 11월 29일)

○ 한국산 인삼가루에서 방사선 처리 살균에 대한 레이블 부재로 해당 제품 전량 폐기 처분 됨

○ 방사선 조사법 (살균법)

○ 국내에서는 식품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 조절의 목적으로 식품에 저장된 선량 이하의 방사선으로 1회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방사선조사 식품은 "조사처리" (treated with radiation, treated by irradiation)라고 문구로 표시하거나 마크를 직경 5c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2. 유기농 검은 콩차

○ 2010년 A 사에서 제조한 '유기농 검은 콩차' 라는 제품이 유기농이라는 인증서가 없이 'Organic' 이라고 제품에 표기가 되어 영국에서 통관 거부됨

3. 유기농 밤 제품

○ S사의 유기농 밤 제품이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입 통관 중 제품 포장에 유기농 로고가 문제시 됨

○ 포장에 유기농 로고가 있으나 유럽에서 인정하는 유기농 인증 관련 서류가 동반되지 않았고, 수입자도 영국 정부에 유기농 제품 수입업자로 등록, 유기농 제품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문제가 된 제품은 전량 폐기 처분 됨

4. 한국산 만두 (2010년 12월, 2011년 1월)

○ 2010년 12월과 1월 CFIA는 S사와 P사가 수입·유통하는 C와 M 브랜드 한국산 냉동만두에 대해 달걀 알레르긴 경고 조치 발표

○ 해당 만두제품은 달걀 단백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달걀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

○ 해당 만두 제품을 수입·유통한 S사는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작업을 진행해옴

○ 2011년 9월까지 해당 만두 제품에 대한 1건의 알레르기 반응이 CFIA에 보고

5. 한국산 호떡 믹스 (2011년 4월)

○ 2011년 4월 CFIA는 A사가 호떡믹스 3종에 대한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호떡믹스 제품은 우유와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우유 및 땅콩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

○ 해당 호떡믹스 제품을 수입·유통한 A사는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작업을 진행

6. 한국산 고추장 (2011년 8월)

○ 2011년 8월 CFIA는 온타리오주, 퀘벡주에, BC주와 앨버타주에서 판매된 S브랜드 고추장에 리콜 및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고추장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콩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콩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

○ 수입업체들은 캐나다에서 고추장 판매를 위해 제품표기를 바꿔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

7. 한국산 미숫가루 (2011년 8월)

○ 2011년 8월 CFIA는 S사의 C 브랜드 미숫가루에 대해 알레르긴(Allergen :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미숫가루 제품이 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표기(Labelling)를 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

○ 해당 제품은 온타리오 주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

8. 한국산 김치 (2011년 9월)

○ 2011년 9월 CFIA는 D사의 J 브랜드 한국산 김치 3종에 대해 알레르긴(Allergen :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CFIA는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한 업체들과 함께 시장에 유통된 해당 김치제품 3종에 대한 리콜 작업 진행 중이다고 밝힘

○ 해당 김치 제품이 육젓(Fish), 새우, 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표기(Labelling)를 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

9. 한국산 검은콩 두유 (2011년 9월)

○ 2011년 9월 CFIA는 R사가 수입·유통하는 E 브랜드 한국산 검은콩 두유에 대해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검은콩 두유제품은 우유, 땅콩 및 견과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 우유, 땅콩 및 견과류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

○ 해당 두유제품을 수입·유통한 R사는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작업을 진행 함

10. 한국산 과자 (2011년 9월)

○ 2011년 9월 CFIA는 U사가 수입·유통하는 G 한국산 과자에 대해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

○ 해당 과자제품은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음에도 제품 포장에 땅콩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음

○ 해당 과자 제품을 수입·유통한 U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온타리오주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작업을 진행 함

Ⅱ. 시사점

□ EU,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적으로 Allergen 관련 식품 규제 더욱 강화 예정

○ Allergen 관련 식품 법규 개정은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라벨링 규제 개선을 통해 모든 공급업체에 제품 성분 표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려는 것이 목적 임

○ 한국기업이 유럽 식품시장 진출 확대 위해서는 정확한 Allergen 표기 필수

○ 한국 식품 수출이 확대됨과 동시에 한국 식품의 Allergen 성분 미 표기로 인한 해당 한국산 식품에 대한 경고 및 리콜 조치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

- Allergen 성분 미 표기로 인한 경고 및 리콜 조치와 레이블 재제작은 해당 제조·유통기업에 비용과 시간적으로 손해
- 이미지 하락과 Allergen 성분 미 표기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은 추가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됨

○ 한국산 식품의 대부분 Allergen 성분 미 표기는 고의적이기보다는 문화적 차이와 Allergen 성분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발생

- 일례로 고추장은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콩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매우 생소한 정보임

○ 유럽에서는 Allergen 성분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더욱 넓게 퍼져 있고 규제도 더욱 까다로운 만큼 제품 수출 전 해당 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함

통관부서 연락처

1. 국가별 검역원 현황 및 담당자 내역 등/ 웹사이트

국가명	웹사이트 & 문서	국가명	웹사이트
오스트리아	http://www.bmg.gv.at	이탈리아	http://www.salute.gov.it/ministero/sezMinistero.jsp?label=uffici

국가명	웹사이트 & 문서	국가명	웹사이트
벨기에	http://ec.europa.eu/food/animal/bips/bips_contact_en.htm 문서참조 (이하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리투아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불가리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룩셈부르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사이프러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라트비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체 코	http://www.svscr.cz	몰 타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독 일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네덜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덴마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폴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에스토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포르투갈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그리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루마니아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페인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웨덴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핀란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슬로베니아	http://www.vurs.gov.si/en/veterinary_administration/organisation/border_inspection_posts/
프랑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슬로바키아	http://www.svssr.sk/sk/adresy/Hranice.asp#1
헝가리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영 국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아일랜드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스위스	유로파 웹사이트 문서참조
노르웨이	http://www.mattilsynet.no/english/import_export		

자료출처

1. 웹사이트

□ **EU 제 13조 조항 원문**

http://ec.europa.eu/nuhclaims/resources/docs/euregister.pdf

□ **독일, 기존 분야별 통관 전산시스템을 ATLAS로 통합 한 e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한 통관**

해당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중앙 데이터처리 서버에 직접 접속 가능.
http://www.zoll.de/DE/Fachthemen/Zoelle/ATLAS/atlas_node.html

□ EU 라벨링 규정은 아래와 같은 EU Commission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있음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foodlabelling/comm_legisl_en.htm)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consumers/product_labelling_및 _packaging/I12090_en.htm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nutritionlabel/index_en.htm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betterregulation/competitiveness_consumer_info.pdf
http://www.food.gov.uk/foodlabelling/ull/claims/

□ 한국의 주요 FTA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비교와 시사점

http://academic.naver.com

□ 한국 – 유럽 FTA 체결 발표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PRES/10/242& format= 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 한국 – 유럽 FTA 10가지 혜택 전문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sAction.do?reference=MEMO/10/423& format= HT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2. 관련법규

□ EU, 국가별 수입 규제 현황

한국 HS CODE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540220	폴리에스터 고강력사 (High tenacity yarn of Polyesters)	AD(규제종료)	2009-09-08
731210	철강 로프 및 케이블(Steel Ropes and Cables) (우회덤핑)	AD(규제중)	2009-08-12
7219.31.0000, 32.1000, 9000, 33.1000, 9000, 34.1000, 9000, 35.1000, 9000, 7220.20	스테인레스 냉연강판(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not further worked than cold-rolled(cold-reduced))	AD(규제종료)	2008-02-01
2804.69	실리콘(Silicon) (우회덤핑)	AD(규제중)	2006-03-06
854011	컬러TV용브라운관 (CPT, Cathode-ray Color Television Picture Tubes)	AD(규제종료)	2006-01-11
8418.1	양문형 냉장고 (Side by Side Refrigerator)	AD(규제종료)	2005-06-02
8542.21.2010	DRAM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 모든 유형의 DRAM과 densities 및 파생품	CVD(규제종료)	2002-07-25
7307.93, 7307.99	철강제 관연결구 류(tube and pipe fitting of iron or steel)	AD(규제중)	2001-06-01
3920.62.00.00	PET Film(Film of Polyethylene Terephthalate, * 탄력성 마크네틱 디스크와 광중합 프린팅 플레이트 관련 필름은 제외)	AD(규제종료)	2000-05-27
3907.6	PET CHIP(※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데 쓰이는 중간재)-페트병, 페트필름, 폴에스텔 제조원료	AD(규제종료)	1999-11-06
5503.20.1000, 9000	폴리에스터 합성단섬유(Synthetic fibers of polyesters)- 쿠션, 자동차 시트, 자켓 등의 섬유제품의 기초재료	AD(규제종료)	1999-10-07
8528-12-9010, 9020,9030,904 0,9050,9060	컬러 TV(17″이하 및 18″ 이상)	AD(규제종료)	1988-02-17

□ 물류보안 인증제도

○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미국이 반테러 미.관 협력제도를 2002년 4월부터 시행한 이후 세계세관기구 (WCO) 와 국제표준기구 (ISO) 등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유럽연합(EU)도 WCO의 제도를 수용한 기업 물류보안 인증제도(AEO)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물류 전 구간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기업)에 대해 보안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며,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검사 횟수를 줄여주거나 통관 감사 자체를 생략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권장 함

○ EU의 AEO 가이드라인은 Part 1, Part 2, Part 3로 구성되어 있음

- Part 1은 관세청과 기업에게 AEO 의 심사와 혜택, 국제공급사슬과 보안개념, AEO 지원서 제출지역,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
- Part 2는 관세청과 기업에게 AEO 인증의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과 각 평가 기준에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사항을 언급
- Part 3은 공급사슬에서의 활동주체 즉 제조기업, 수출업자, 포워더, 창고운영자, 운송사, 관세사, 수입업자 등이 AEO 인증시 고려해야 할 평가항목을 설명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물류보안 인증제도 ▐

구 분	제 도	시행시기
국제관세기구	WCO Framework	2005.06
ISO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Supply Chain	2007(PAS : 2005)
미국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2002.04
EU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2008.01
싱가포르	STP(Secure Trade Partnership)	2008.10

3. 관련책자

○ 관세행정상 품목분류 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을 통한 입법화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한상필

○ 분기별 EU 동향(2000~2009) /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t.go.kr/korean/eu/missiontoeu/data/book/revision2/index.jsp

○ EU 정책 브리핑 2차 개정판, 2010 / 주 유럽연합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t.go.kr/korean/eu/missiontoeu/data/book/revision2/index.jsp

chapter 02

검역제도

제1절 검역제도 일반

Ⅰ. 개요

○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농수산물에는 식물의 위생상태, 식품의 위생, 동물의 수의학적 안전도, 그리고 농약 잔류량에 대한 검역이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EU의 대처가 강화됨

○ 유럽연합 회원국의 검역에 관한 최고 중앙기구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Food and Veterinary Office이며, 식품위생, 동·식물 검역 및 동물의 복지 등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을 유럽연합 회원국 및 제 3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 감독함

○ 실제 제품에 대한 검역은 회원국 검역당국에서 담당함

Ⅱ. 농수산물식품의 검역

○ 농수산물식품의 검역은 농산물의 경우 산 동물, 육류 등은 EU 동물 검역제도(Veternary Checks)에 따라 사전 검역과정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하며, 식물

의 경우 위생 검역증(Phytosanitary Certificate)을 받아야 수입 가능

○ 농산물의 경우 상기 검역필요 품목은 반드시 검역을 필해야 하며 식품, 어류의 경우 위생검역증(Health Certificate)를 첨부해야 함

○ 영국은 식물을 병충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에 수입되는 Plants, Plant products, Forest tree plants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적절한 검역 조치를 취함

○ 영국 농수산부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입 허가서를 발부하거나 생산국에서 식물위생에 문제가 없다는 증서인 Phytosanitary Certificate(위생검역증)을 발부받아야 영국으로의 수입 가능

○ 위생검역증을 수반하는 수입품의 경우는 영국이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여부를 체크하여 이상이 있을 시에는 샘플 테스트를 함. 위생검역증의 유효조건은 1) 수송일 14일 전 인스펙션, 2) 위생검역증은 식물이 생육한 지역의 공공 Plant Protecton Service 기관에서 발부, 3) 식물 위생검역증의 Plant Protection Service 기관이 지정한 검역관의 서명 4) EU지역이 아닌 국가에서 위생검역증이 발부될 경우 영어 번역 첨부 등임

Ⅲ. 검역 인증서 (Certificate of Inspection)

○ EU 규정 1788/2001에 따라 영국으로 유기농 제품들을 수출할 때는 원산지인 제3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이 검역인증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발행기관 및 제품검역기관
- 생산자, 수출업자, 그리고 수입업자
- 출항국, 수량, 제품코드 (tariff number)

○ 이 검역인증서를 유럽 연합 지역의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영국의 경우 제품들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Port health authority(PHA)에 제출함

○ PHA는 이 검역인증서를 Defra 내의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함

○ PHA의 승인 사인과 도장은 검역인증서가 정확하고 제품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유기농 제품이 통관하기 전에 필요함

○ 또는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업자 또는 그 대행업체가 PHA에 사전 통지할 수 있음

Ⅳ. 최근 검역 근황

1. EU 과일주스 새 규정 공시

○ 과일 및 넥타 주스에 관한 법규인 2012/12/EU이 공시됨

○ 이 규정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혼합 주스에 대한 혼란과 '무가당' 이라는 단어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혼합 주스는 이름에 내용물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

○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90%의 사과와 10%의 딸기가 섞여진 주스도 많은 업체들이 '딸기 주스'라고 불러왔는데 이제는 반드시 '사과 및 딸기 주스'라고 명명해야 함

○ 만일 3가지 이상의 과일이 주스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일 주스 믹스(fruit juice mix)'라고 불리게 됨

○ 또한 이 새 규정은 과일 주스의 정의를 설탕 또는 어떠한 감미료도 함유 하고 있지 않은 순수 과일즙 음료로 제한하고 있으며, 과일 퓨레와 물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넥타에는 설탕 또는 감미료가 첨가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채, '설탕 무첨가(without added sugar)'라는 문구는 사카린과 같은 인공 감미료가 함유된 넥타 주스에는 허용되지 않음

○ 오렌지 주스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색과 맛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최대 10%의 만다린 주스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브라질 및 기타 국가에서는 일반적임

○ 그러나 유럽 연합으로 수입되는 오렌지 주스들은 유럽 연합의 새 규정에 따라 반드시 오렌지 과즙으로만 생산되어야 하며, 만일 만다린 과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오렌지 및 만다린 주스'라고 표기해야 함

○ 이 새 규정은 2013년 4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전 규정에 따라 제조된 제품은 2015년 4월 28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함

○ 이 규정은 유럽 연합 회원 국가들의 법규의 상위법으로 우선 적용됨

2. 시사점

○ 유럽연합의 주스에 대한 정의를 엄격하게 제한함에 따라 향후 통관 서류에 'Juice'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100% 해당 과일의 과즙이 아니거나 명확하게 어떤 과일이 섞여있는지 표기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품 성분 분석 등의 과정을 통해 통관이 거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 법안이 전면 실행되기 이전에 제조업체들에게 유예기간을 두어 이 법안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으므로 이 기간에 반드시 이 법안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통관서류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명칭도 변경할 필요가 있음

제 2 절 품목별 검역제도

Ⅰ. 수산물

1. 기존 수산물 검역제도

○ 수산물의 EU 지역 내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Directorate-General for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에서 인정하는 비(非) EU 국가의 해당 행정기관이 발급한 공식 인증서가 필요했음

○ 이 공식인증서는 수출자격이 있는 국가에 사전 발급되어 EU 국가로의 수출을 승인을 받았음

2. 수산물 어획 증명서

○ 'EC IUU(I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통제법령'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EU로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은 합법적으로 어획이 됐다는 '수산물 어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증명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발급함

○ 유럽 영토 내 도착 예정시간으로부터 적어도 근무일 기준 3일 전에 수입업체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회원국의 관할당국에 승인 받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원국의 관할당국은 다음의 경우 추가 증명서류 또는 기국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수산제품의 EC 수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수입업체가 해당 제품에 대한 어획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수입하려는 제품이 어획증명서에 언급된 것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 어획증명서가 기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어획증명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누락된 경우
- 수입업체가 수산제품이 제14(1) 또는 제14(2)조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증명할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
- 어획증명서상에 어획 원산지 선박으로 등재된 어선이 EC IUU 선박 리스트 또는 제30조에서 언급된 IUU 선박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비협력 국가로서 기국(선적국) 당국이 어획증명서를 검증한 경우

○ 수산제품의 정의로부터 예외 되는 제품 목록은 아래와 같음

- 민물수산제품
- 치어 또는 유생으로부터 얻은 양식 제품

- 관상용 어류
- 활굴
- 가리비 과의 조개(펙턴, 클라미스, 프라코펙텐 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 포함)를 포함한 살아있거나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냉동된 가리비(Coquilles St Jacques (Pecten maximus) 기타 신선 또는 냉장된 가리비
- 홍합
- 바다에서 어획된 것을 제외한 달팽이
- 처리 및 보존된 연체동물 (molluscs)

Ⅱ. 임산물

○ 유럽식품안전청의 식품 건강 패널(Plant Health Panel)은 최근 유럽에서 발견된 두 가지 식물 해충에 대한 과학적 조언을 발행함

○ 한 가지는 곰팡이 균의 일종인 Gibberella cirinata에 의해 발생되는 소나무 줄기마름병이고 다른 한 가지는 밤나무 혹벌(the oriental chestnut gall wasp, Dryocosmus kuriphilus)임

○ 유럽위원회는 유럽 식품안전청에 두 가지 해충이 유럽지역에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평가와 가능한 위험 대처 방안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해 줄 것을 의뢰함

○ 과학적인 문헌조사와 기후적 적합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패널은 두 해충이 서식할 여지가 있으며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와 같이 이 해충에 취약한 지역으로 더 확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

○ 다른 해충이 발생하거나 두 해충이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럽위원회에 의해 임시적인 방역체계는 이미 실행되고 있음

○ 위원회는 영구적인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유럽 식품안전청에 과학적인 조언을 요청함

1. 소나무 줄기마름병

○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미국, 일본, 한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 발생하는 것으로 Gibberella circinata는 소나무와 더글라스 전나무(Douglas firtrees)에 가장 치명적인 질병임

○ 유럽에서 최근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로부터 소나무 줄기마름병의 발생이 보고되고 있음

○ 이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오염된 씨앗, 목재로 만든 제품,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장식용 식물을 통해 전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퍼짐

○ 이 Gibberella circinata에 감염된 나무는 느린 성장과 심각한 가지 손상이 특징임

○ 이 해충의 영향은 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의 일부 지역에 매우 심각할 수 있음

○ 패널은 나무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소나무 줄기마름병은 재빨리 유럽의 다른 취약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

○ 이 해충은 천만 헥타르가 넘은 소나무 서식지역과 숲을 황폐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충격은 막대할 수 있음

○ 패널에 따르면 씨앗, 식물, 나무, 토양, 해충에 감염된 기계 등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 해충이 유럽연합 지역에서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 밤나무 혹벌은 아시아가 원산지이나 현재는 미국에 있는 밤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밤나무 혹벌은 가을에 나무의 싹에 알을 낳고 봄에 유충이 나뭇잎 먹으면서 성장하는데 이를 혹선충이라고 부르며 잎의 성장을 방해함

○ 이 해충은 식물의 성장을 느리게 하고 밤의 생산량을 감소시킴

○ 밤나무 혹벌은 감염된 밤나무를 다른 지역에 식재하면서 확산됨

○ 이 해충이 이탈리아 북부인 피드몬트(Piedmont) 지역에 유입되면서 현재는 거의 이탈리아 전 지역에서 밤나무 혹벌이 발견되고 있으며 프랑스, 슬로베니아, 스위스, 헝가리에서도 보고되고 있음

○ 패널은 포르투갈 북부, 스페인 북부,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밤 생산 지역이 특히 위험하다고 결론을 지음

○ 이 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유입되는 위험을 감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식품안전청은 밤나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이 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2. 시사점

○ 유럽 식품안전청의 패널이 소나무 줄기마름병을 '미국, 일본, 한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국가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또한 밤나무 혹벌의 경우는 밤나무를 사용한 모든 제품은 이 해충이 없다는 것을 인증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유럽으로 소나무 및 전나무, 그리고 밤나무 관련 제품 수출시 해당 해충이 없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검역 절차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자료출처

○ 최근 검역 근황 www.foodmanufacture.co.uk

○ 선물포장, 다양한 식품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 내용물이 낱개로 포장되어있는 경우 (21 CFR 101.9(h)49)
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FoodLabelingNutrition/FoodLabelingGuide/ucm064894.htm

○ 색소사용 라벨링 관련 웹사이트
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FoodLabelingNutrition/FoodLabelingGuide/ucm064880.htm

○ 건강보조식품 관련 라벨링 가이드
http//www.fda.gov/Food/GuidanceComplianceRegulatoryInformation/GuidanceDocuments/Dietary Supplements/DietarySupplementlabelingguide/default.htm

○ 인삼농약검출 보고서 (2008년 자료)
http//www.fda.gov/Food/FoodSafety/FoodContaminantsAdulteration/Pesticides/ResidueMonitoring Reports/ucm116752.htm

chapter 03

라벨링제도

제1절 라벨링제도 일반

Ⅰ. GM-free(유전자 조작 프리) 라벨링

○ 유럽 집행 위원회(EC)는 소비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된 유전자 조작 프리 라벨링(GM-free labelling)을 내년에 도입하는데 대한 자문을 구하고 있음

○ 기존 유럽연합 규정에서는 유전자 조작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강조하는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함

○ 이 규정에 유전자 조작된 성분이 0.9% 이하인 식품 또는 사료는 면제됨

○ 현재 유럽 전역에서는 자발적인 'free-from' 라벨링 제도가 일반화 되고 있는 추세이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GM 식품의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운데, 부정적인 상표의 확산 역시 소비자를 혼동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Ⅱ. 영국, 새로운 식료품 라벨 시스템 발표

○ Anna Soubry 영국 보건성 장관은 10월 24일, 새로운 '하이브리드 식료품 영양성분표시 라벨 시스템'을 발표 하였는데 영국의 모든 소매업체들이 2013년

여름까지 이를 채용할 것으로 보임

○ EU 규정에는 새로운 식료품 라벨 시스템이 자발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 정부는 모든 식품업계가 이에 참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 보건성은 현 시스템 하에서는 슈퍼마켓들이 서로 다른 영양표시 라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식료품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새로운 시스템 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식료품의 설탕/지방/염분 함유량, 칼로리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함

○ 영국 보건의료시스템은 현재 비만을 위해 연간 50억 파운드를 지출하고 있으며, 60%의 어른과 30%의 어린이가 비만이거나 과체중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새로운 식료품 라벨 시스템은 모든 식료품의 1일 권장 섭취량, 지방/염분/설탕 등의 함유량과 그 '높음, 중간, 낮음'을 교통신호 컬러로 표시하는 코드 등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소비자들이 한눈에 그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식료품 포장의 전면에 부착될 예정임

○ 그러나 영양성분표시의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 새로운 식료품 라벨 시스템이 특정 식품그룹 들을 '해로운 것'으로 매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일고 있음

○ 농부, 육류 제조업체, 낙농품 업체 등은 새로운 라벨 시스템이 영양성분 표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육류, 치즈 등과 같은 고지방 제품들을 간단히 '해로운 것'으로 매도하여 판매 감소를 야기한다고 비판함

○ 영국농부연맹은 새로운 식료품 라벨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교통 신호 컬러 표시방식은 지나치게 단순하여 특정 식품그룹들을 간단하게 '해로운 것'으로 매도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야기하고 해당식품들이 지방/ 설탕/염분 함유량을 낮추기 위하여 들이고 있는 노력을 전혀 반영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영국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들은 이미 '교통신호 컬러 라벨'과 1일

권장 섭취량을 보여주는 하이브리드 라벨을 사용하고 있음. 지난 9월에는 Morrisons사가 영국 4대 슈퍼마켓 체인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식료품 포장에 하이브리드 라벨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음

○ 영국 보건성은 곧 새로운 라벨의 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속개할 예정임

Ⅲ. 알레르기 유발 항원 표기

○ 유럽 내 주요 식품 제조회사들이 유럽연합의 알레르기 유발 항원 관리 실행 수준에 동의를 하면서 라벨을 목적으로 하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 표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2년 이내 발표될 것으로 관계 전문가들 및 제조업체들은 전망하고 있음

○ 이 실행 수준은 특정 유발 항원에 집중되면서 기타 항원들에 대한 경고 문구는 불필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 항원 표기가 국제적으로도 조화될 수 있도록 Voluntary Incidental Trace Allegen Labelling (VITAL)을 개발한 호주 및 뉴질랜드의 알레르기 유발 항원 관리국과 국제 생명 과학 연구소 (International Life Science Institute, ILSI)의 유럽 식품 알레르기 실무진의 검증을 받음

○ 새로 규정된 식품 정보 법규의 36.3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을 표기 하는 'may contain'에 대한 정보를 채택해야 함

○ 지금까지는 'may contain'이라는 라벨링에 대한 식품 제조업체들과 소비자간에 오해와 개념에 대한 불일치가 존재해 왔음

○ 현행 법규 Directive 2000/13/EC 에서는 사전 패키지된 식품에는 모든 알레르기 유발 성분과 물질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패키지된 식품에는 알코올이 함유된 음료도 포함됨

○ 표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 항원인자들로는 샐러리, 글루텐을 함

유하고 있는 곡물 (예: 밀, 귀리, 보리, 호밀 등), 갑각류, 계란, 어류, 루핀 (Lupin), 우유 (락토즈 포함), 이매패류, 견과류 (예: 아몬드, 헤이즐넛, 호두, 캐슈넛, 피칸, 브라질넛,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 넛, 퀸즐랜드 넛), 깨, 대두, 10mg/kg 또는 10mg/litre 이상으로 농축된 아황산 및 아황산염이 있음

제 2 절 품목별 표기방법

Ⅰ. 의무 표시사항

□ **라벨링 표시사항은 모든 식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표시사항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표기하는 선택적 표시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선택적 표기사항은 품목별로 상이함**

1. 의무 표시사항

제품명 (the name of the food)
성분 (list of ingredients) 및 성분함량 또는 성분 카테고리 : 함량이 높은 순으로 표기, 성분카테고리 및 특정 성분 순으로 표기
알레르기 유발 성분
유효기간
보관방법
제조회사 이름 및 주소 또는 EC내 수입/판매업자
사용방법 (사용방법 부재시 식품의 이용이 어려울 경우)
Net Quantity
영양성분
알코올 도수 (1,2% 이상의 알코올 음료에만 해당)
원산지 (원료의 일부가 제품의 원산지와 달라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을 경우)

2. 의무 표기 제외제품

○ 신선 과일 및 야채

○ 탄산수 (carbonated water)

○ 발효식초

○ 치즈, 버터, 우유 및 발효된 크림

○ 단일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성분과 제품명이 동일하여 소비자들이 제품명을 통하여 분명하게 성분을 알 수 있는 제품

3. 유효기간 표기 제외제품

○ 알코올 도수 10% 이상인 와인 및 알코올 음료

○ 탄산음료

○ 5리터 이상의 케이터링용 대용량 주스 및 알코올 음료

○ 식초

○ 소금

○ 고형 설탕

○ 추잉껌

○ 개별 포장의 아이스크림

4. 원산지 표기 의무 제품

○ 현재 법규에서는 유럽연합 외부에서 유입되는 소고기, 생선, 송아지 고기, 조개류, 와인, 신선 농산물, 꿀, 올리브 오일, 그리고 가금류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Ⅱ. 영국, 새로운 생선 라벨링 규정 도입

○ 잉글랜드를 비롯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리고 북 아일랜드까지 전체 영 연방이 새로운 생선 라벨링 규정을 시작함

○ 이 2010 생선 라벨링 규정은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데, 이 신규 규정은 최근에 시장에 출시된 새로운 생선들을 추가하였음

○ 이는 생선 라벨링을 올바르고 일관되게 유지,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무엇을 구매했는지, 생선이 바다에서 잡힌 것인지, 내륙에서 잡힌 것인지, 또는 양식으로 길러진 것인지, 그리고 바다에서 잡힌 것이라면 어느 바다에서 잡힌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임

○ 즉, 새로운 생선 라벨링에는 생선 종의 이름과 어획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함

Ⅲ. 유기농 로고

○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유기농 제품 로고사용에 대한 유예기간이 금년 7월 1일부로 끝남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일정 기준에 부합하게 생산된 모든 사전패키지된 제품은 공식 유기농 로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비 패키지 제품과 제 3국에서 수입된 유기농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선택사항임

○ 유로 – 나뭇잎 모양의 유기농 로고는 2010년 7월에 실행되기 시작했으며, 업계가 새로운 규정에 맞도록 패키지를 바꾸는 한편, 기존 패키지를 폐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시행했었음

○ 유럽연합의 공식 유기농 로고는 12개의 별이 나뭇잎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유럽연합 회원국이 동일한 공식 로고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유럽연합의 유기농 규정에 부합하도록 생산된 제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유럽연합 내에서 유기농 제품의 섭취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유럽 전체 시장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난 10년간 유기농 인증 식품 및 재료의 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해 경작지의 약 5% 농장의 2% 이상이 유기농 인증을 받음

○ 유기농 로고를 패키지에 사용하는 제품들은 농산물 원재료가 어디에서 경작됐는지, 'EU 농산물', '비 EU 농산물', 또는 'EU/비 EU' 농산물의 방식으로 명시해야 함

○ 만일 모든 원재료가 단일 국가에서 경작됐다면 그 해당 국가명을 밝혀야 하며, 국가, 지역, 또는 개별 단체가 인증한 유기농 로고는 공식 유럽연합 로고 옆에 함께 표시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임

○ 유럽 연합의 유기농 로고는 유럽 연합 포털 사이트인 http//ec.europa.eu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유럽 연합 유기농 로고▐

제 3 절 라벨링사례

Ⅰ. 통관과정에서의 문제 사례

1. '12년 10월 통관과정에서의 라벨링 문제 사례

○ 통관 과정에서 라벨링 문제로 RASFF에 보고된 사례는 아래와 같음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0월 31일	프 랑 스	홍 콩	라면의 라벨링 불일치	압류조치
10월 31일	프 랑 스	홍 콩	라면의 라벨링 불일치	공식적 보류
10월 30일	이탈리아	태 국	냉동 맛살 라벨 중 lysozyme (E 1105) 내역 불일치	반송조치
10월 8일	노르웨이	인 도	냉동 새우의 라벨링 불분명 – 제조년월일 과 유통기한 표시 없음	반송조치

2. '12년 11월 통관과정에서의 라벨링 문제 사례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1월 29일	포르투갈	한 국	한국산 인삼가루의 방사선처리 살균에 대한 레이블 부재	폐기처분
11월 27일	이탈리아	중 국	냉동 메갈로돈 상어 (sharkfillets/Carchroclesmegalodon) 필렛의 라벨링 부정확	폐기처분
10월 30일	이탈리아	태 국	냉동 맛살 라벨 중 lysozyme (E 1105) 내역 불일치	반송조치
11월 6일	그 리 스	터 키	가공 처리한 피망의 잘못된 라벨링 (원산지 표시잘못)	반송조치

Ⅱ.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사례

1. 영국 세인스버리의 Toffee apples

○ 세인스버리사는 자체 브랜드 제품의 Toffee apples 를 전면 회수한다고 밝힘

○ 이는 제품에 우유가 함유되어 있으나 버터만 표기되어있어 우유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임

○ 세인즈버리사는 미 판매된 Toffee apples 전량을 회수 조치하였으며, 상점 내에도 이 제품이 왜 회수 조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여 고객들이 정보 전달 함

○ 이에 따라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실행

2. 독일 Aldi, Specially Selected sauces 전면 회수 조치

○ Aldi는 11월 22일 아래의 세가지 Specially Selected sauces를 전면 회수한다고 밝힘

○ 이는 이 소스에 계란이 포함되어 있으나 제품에 표기 되어 있지 않아 계란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임

○ 제품 상세는 아래와 같음

- Specially Selected Pesto Rosso Sauce, 190g (barcode 25192896)
- Specially Selected Pesto Genovese Sauce, 190g
- Specially Selected Tomato & Ricotta Pasta Sauce, 340g (barcode 25279474)

3. Fronzen Value 사, 아이스크림 전면 회수

○ Fronzen Value 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다양한 아이스크림 제품을 전면 회수한다고 밝힘

○ 이는 제품에 견과류, 땅콩 또는 아황산이 함유되어 있으나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실행하고 미판매된 모든 제품들은 시장에서 회수함

4. 영국 세인스버리사 자체 브랜드 초콜렛 바 전면 회수 조치

○ 세인스버리사는 자체 브랜드 제품의 초콜렛 바를 전면 회수한다고 밝힘

○ 이는 제품에 땅콩이 함유되어 있으나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Moet Hennessy 사는 Krug 샴페인 일부에 대해 전면회수 한다고 밝힘

○ 제품에 아황산이 함유되어 있으나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이 성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이미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환불 조치를 실행하고 미판매된 모든 제품들은 시장에서 회수함

자료출처

○ EU 라벨링 규정
-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foodlabelling/comm_legisl_en.htm
- http//europa.eu/legislation_summaries/consumers/product_labelling_and_packaging/I12090_en.htm

○ European Commission 식품 라벨링 보고서
-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betterregulation/competitiveness_consumer_info.pdf

○ 영국 식품안전청
- www.food.gov.uk/foodlabelling/

○ 라벨링 오류 관련 사이트
- http//www.food.gov.uk/foodlabelling/ull/claims/
- http//www.food.gov.uk/news/newsarchive/2010/apr/fishlabelling
-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nutritionlabel/index_en.htm

○ 유기농 라벨링 자료
- http//ec.europa.eu/agriculture/organic/eu-policy/logo_en

○ EU 및 영국 라벨링 세부규정
- http//www.food.gov.uk/foodlabelling/ull/claims/
- http//www.food.gov.uk/news/
- http//ec.europa.eu/food/food/labellingnutrition/nutritionlabel/index_en.htm
- http//www.europarl.europa.eu/news/public/focus_page/008-75601-158-06-24-901- 20100607FCS75591-07-06-2010-2010/default_p001c016_en.htm

chapter 04

통관보류 및 억류사례

제1절 10월 검역 불합격 사례

Ⅰ. '12년 10월 검역 불합격 사례

□ '12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유럽 내에서 검역 불합격 문제 사례와 후속조치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12년 10월 검역 불합격 사례▐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0월 31일	독일	터 키	건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7.48; Tot. = 8.68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31일	독 일	터 키	건무화과에서 (B1 = 12.17; Tot. = 14.93 μg/item)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31일	포르투갈	이집트	수수에서 aflatoxins (B1 = 57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31일	프랑스	홍 콩	라면의 라벨링 불일치	압류조치
10월 31일	프랑스	홍 콩	라면의 라벨링 불일치	공식적 보류
10월 31일	영 국	인 도	오크라(okra)에서 monocrotophos (0.05mg/kg - ppm)와 acephate (0.30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10월 31일	스페인	인 도	냉동맛살에 공인되지 않은 색상 사용 /E160b-annato/bixin/norbixin	수입 비승인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0월 30일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유채깻묵(rapeseed cake)에서 살모넬라균 (presence /25g) 검출	반송조치
10월 30일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유채깻묵(rapeseed cake)에서 살모넬라균 (presence /25g) 검출	반송조치
10월 30일	독 일	터 키	헤이즐넛에서 aflatoxins (B1 = 6.4; Tot. = 19.3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30일	이탈리아	태 국	냉동 맛살 라벨 중 lysozyme (E 1105) 내역 불일치	반송조치
10월 30일	이탈리아	터 키	건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41.1; Tot. = 50.4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30일	노르웨이	태 국	냉동 고수잎에서 carbofuran (0.075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10월 30일	이탈리아	이집트	껍질땅콩에서 aflatoxins (B1 = 11.9; Tot. = 12.3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29일	이탈리아	터 키	건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4.7; Tot. = 4.9 μg/kg – ppb)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29일	이탈리아	터 키	건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5.4; Tot. = 10.6 μg/kg – ppb)	반송조치
10월 29일	스페인	인 도	냉동맛살에공인되지않은색상사용 E160b–annato/bixin/norbixin	반송조치
10월 29일	독 일	터 키	생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1.0; Tot. = 12.79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29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3.5; Tot. = 10.2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26일	독 일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9.97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26일	영 국	터 키	건 무화과 paste에서 aflatoxins (B1 = 3.3; Tot. = 4.0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26일	독 일	모로코	정어리에서 histamine (239 mg/kg – ppm)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26일	이탈리아	터 키	잣에서 Salmonella spp. (presence /25g) 검출	반송조치
10월 26일	스페인	인 도	잘못된 온도조절로 인한 콜드체인의 파열 (갑오징어sepiaspp.)	수입비 승인
10월 26일	프랑스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7,7+/–7,1; Tot. = 18,6+/–7,4 μg/kg – ppb) 검출	폐기처분
10월 26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3.2; Tot. = 12 μg/kg – ppb)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26일	프랑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폐기처분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B1 = 14,3+/−5,7; Tot. = 15,0+/−6,0 μg/kg − ppb) 검출	
10월 26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33.4; Tot. = 35.1 μg/kg − ppb)검출	반송조치
10월 26일	프랑스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20,7 +/− 8,3; Tot. = 21,5 +/− 8,6 μg/kg − ppb) 검출	폐기처분
10월 26일	프랑스	터 키	헤이즐넛에서 aflatoxins (B1 = 13.4; Tot. = 50.9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26일	덴마크	터 키	헤이즐넛에서 aflatoxins (Tot. = 15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25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1.2; Tot. = 11.95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25일	영 국	터 키	건포도에 곰팡이 발생 (15000 CFU/g)	반송조치
10월 25일	이탈리아	터 키	잣에서 Salmonella spp. (presence /25g) 검출	반송조치
10월24일	독 일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6.26; Tot. = 17.36 μg/kg − ppb) 검출	폐기처분
10월24일	스페인	포클랜드 제도	냉동 patagonian 오징어에서 심각한 가솔린 냄새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24일	스페인	포클랜드 제도	냉동 메르루사(민대구)에서 심각한 가솔린 냄새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24일	네덜란드	중 국	포멜로(pomelo)에서 triazophos (0,043 mg/kg − ppm)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24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 에서 aflatoxins (B1 = 20.6; Tot. = 36.9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24일	에스토니아	중 국	껍질을 제거한 냉동 hake(대구과)에서 기생충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23일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땅콩에서 aflatoxins (B1=4,4/20,7;Tot.=5,1/23,2μg/kg−ppb)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23일	네덜란드	홍 콩	새우계란면에서 aluminium (14.7mg/kg−ppm) 과다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23일	노르웨이	태 국	캔참치의 가열처리 부족	반송조치
10월 23일	영 국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2.6; Tot. = 17.5 / B1 = 55.5; Tot. = 58.1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23일	루마니아	미 국	건강보조제의 검역증명서 부재	폐기처분
10월 23일	영 국	나이지리아	콩가루에서 승인되지 않은 살충제 물질인 dichlorvos (0.02 mg/kg − ppm)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23일	영 국	나이지리아	콩에서 승인되지 않은 살충제 물질인 dichlorvos (0.15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0월 23일	영 국	나이지리아	콩에서 승인되지 않은 살충제 물질인 dichlorvos (0.09 mg/kg – ppm)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22일	스페인	모리타니	냉동 Trachurus trachurus(고등어 종류)의 위생상태 불량	보류
10월22일	영 국	터 키	헤이즐넛에서 aflatoxins (B1=5.3;Tot.=24.1μg/kg–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22일	스페인	나카라과	잘못된 온도조절로 인한 콜드체인의 파열 –냉동새우	공식적 보류
10월 22일	네덜란드	미 국	땅콩에서 aflatoxins (B1 = 9.8; Tot. = 10.7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22일	영 국	인 도	으깬 고추에서 aflatoxins (B1 = 9.9; Tot. = 10.2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19일	이탈리아	인 도	오크라(okra)에서 triazophos (0,09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10월 19일	스페인	브라질	냉동 가금류에서 Salmonella spp. (presence /25g)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9일	스페인	브라질	냉동 가금류에서 비승인된 물질인 clopidol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9일	스페인	브라질	냉동 가금류에서 비승인된 물질인 clopidol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9일	스페인	모리타니	밀가루, 고기, 팔레트에서 Salmonella spp. (presence /25g) 검출	반송조치
10월 19일	노르웨이	태 국	캔 가다랑어의 가열처리 부족	반송조치
10월 19일	이탈리아	인 도	캔참치에서 histamine (431.8; 294; mg/kg – ppm)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9일	영 국	인 도	생강가루에서 aflatoxins (B1 = 11; Tot. = 14.2 / B1 = 15.4; Tot. = 18.3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19일	독 일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6.2; Tot. = 17.3 μg/kg – ppb) 검출	폐기처분
10월 19일	이탈리아	홍 콩	비승인된 유전자 조작(P35S) 쌀국수	수입 비승인
10월18일	영 국	인 도	생 오크라(okra)에서 thiacloprid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18일	스페인	터 키	껍질 벗긴 헤이즐넛에서 곰팡이 검출	반송조치
10월 18일	덴마크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22; Tot. = 27 / B1 = 71; Tot. = 110 μg/kg – ppb) 검출	폐기처분
10월 18일	벨기에	인 도	냉동 black tiger shrimps 의 포장 불량	반송조치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0월 18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0.8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18일	스페인	터 키	껍질 벗긴 헤이즐넛에서 곰팡이 검출	반송조치
10월 18일	핀란드	브라질	땅콩에서 aflatoxins (B1 = 64; Tot. = 72 / B1 = 17; Tot. = 19 μg/kg – ppb) 검출	압류조치
10월 17일	네덜란드	중 국	카이란(chinese broccoli)에서 pyraclostrobine (0,76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10월 17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8,7; Tot. = 9,6 μg/kg – ppb)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7일	네덜란드	도미니카 공화국	생 껍질 콩 (yard long beans)에서 methomyl (0.47 mg/kg – ppm)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7일	키프로스	인 도	으깬 고추 후추에서 aflatoxins (B1 = 11.1; Tot. = 11.1 μg/kg – ppb)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6일	이탈리아	브라질	브라질 너트 (brazil nuts) 에서 aflatoxins (B1 = 10.4; Tot. = 23.7 / B1 = 5.8; Tot. = 13.0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16일	폴란드	태 국	캔 참치의 가열처리 부족	반송조치
10월 16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9.9; Tot. = 9.9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16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2.7; Tot. = 10.6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16일	스페인	모로코	잘못된 온도조절로 인한 콜드체인의 파열 – 냉동 정어리	수입비승인
10월 16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7,2; Tot. = 7,5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16일	그리스	페루	어분에서 Salmonella 검출	물리적/ 화학적 처리
10월 16일	덴마크	중 국	냉장 포장제에서 금지된 클로람페니콜 chloramphenicol (0.35 μg/kg – ppb) 검출	폐기처분
10월 16일	덴마크	중 국	냉장 포장제에서 금지된 클로람페니콜 chloramphenicol (0.35 μg/kg – ppb) 검출	폐기처분
10월 16일	그리스	페루	밀가루, 고기, 팔렛트에서 Salmonella spp. (presence /25g) 검출	물리적/ 화학적 처리
10월 16일	독 일	브라질	냉동 닭간에서 비승인 물질인 clopidol (18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16일	이탈리아	튀니지	냉동 새우에서 비정상적인 냄새 발생	반송조치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0월 15일	덴마크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5.5; Tot. = 9.5 / B1 = 200; Tot. = 400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15일	덴마크	이 란	피스타치오의 검역증명서 부재	반송조치
10월 15일	이탈리아	세네갈	커피음료 가루에 비승인 물질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5일	스페인	모로코	잘못된 온도조절로 인한 콜드체인의 파열 – 냉동 정어리	공식적 보류
10월 12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2.5; Tot. = 13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12일	이탈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1.4; Tot. = 12.1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12일	이탈리아	중 국	쌀국수 에서 과도한 aluminium (73 mg/kg – ppm)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2일	이탈리아	중 국	붉은 쌀 추출물에서 비승인된 물질 검출	반송조치
10월 11일	오스트리아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6,5; Tot. = 43,48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11일	독 일	중 국	냉동 새우에서 금지된 물질인 nitrofuran (metabolite) furazolidone (AOZ) (1.10 μg/kg – ppb)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1일	이탈리아	브라질	수입 비 승인 식물인 카르퀘자 carqueja 수입	
10월 11일	이탈리아	터 키	잣에서 Salmonella spp. (presence /25g) 검출	
10월 11일	스페인	모로코	잘못된 온도조절로 인한 콜드체인의 파열 – 냉동 정어리	수입 비승인
10월 11일	이탈리아	페 루	초콜렛 비스킷에 비승인 색소 E 127 사용	반송조치
10월 11일	벨기에	중 국	유기농차에서 acetamiprid(0.28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10월 11일	덴마크	태 국	생 붉은 고추에서 dicofol (1.2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10월 11일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소고기에서 쉬가독소 shigatoxin 검출	반송조치
10월 10일	이탈리아	중 국	비승인된 유전자 조작 쌀 (presence tNOS) 수입	
10월 10일	영 국	중 국	케일(kale)에서 dimethomorph (0.29 mg/kg – ppm)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0일	포르투갈	브라질	냉동 절단 닭고기와 내장에서 비승인된 clopidol (2.1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10일	스페인	브라질	냉동 닭고기에서 비승인 물질인 clopidol (2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10일	스페인	브라질	냉동 절단 닭고기와 내장에서 비승인 물질인 clopidol (1.5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10월 10일	스웨덴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29; Tot. = 36 μg/kg – ppb) 검출	폐기처분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0월 9일	덴마크	터 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 = 100; Tot. = 120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9일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냉장 소고기에서 쉬가독소 shigatoxin 검출	반송조치
10월 9일	이탈리아	중 국	간장맛 라면에서 과도한 aluminium (16.8 mg/kg – ppm)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9일	스페인	미 국	껍질 아몬드에서 aflatoxins (B1 = 8; Tot. = 10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9일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냉장 소고기에서 쉬가독소 shigatoxin 검출	반송조치
10월 9일	덴마크	베트남	냉동 새우에서 Salmonella Weltevreden (presence /25g) 와 Vibrio cholerae (presence /25g)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9일	영 국	중 국	땅콩의 검역증명서 및 품질보고서 부재	반송조치
10월 9일	영 국	인 도	생 커리잎에서 profenofos (0.18 mg/kg – ppm)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9일	네덜란드	인 도	땅콩에서 aflatoxins (B1 = 8.1; Tot. = 8.6 / B1 = 37.6; Tot. = 42.9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9일	영 국	미 국	잘못된 온도조절로 인한 콜드체인의 파열– 냉동명태 (Alaskapollack과Pacificpollack)	폐기처분
10월 8일	핀란드	태 국	고추 스프가 들어있는 즉석 라면에서 aflatoxins (B1 = 12 / B1 = 19 / B1 = 31 μg/kg – ppb)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8일	스페인	모로코	갑오징어의 검역증명서 부재	폐기처분
10월 8일	덴마크	모리타니	어분에서 Salmonella spp. (2 out of 5 samples /10g) 검출	물리적/ 화학적 처리
10월 8일	노르웨이	인 도	냉동 새우의 라벨링 불분명 – 제조년월일 과 유통기한 표시 없음	반송조치
10월 8일	이탈리아	태 국	연육(surumi)에 신고되지 않은 egg (albumin 〉0.6 mg/kg – ppm) 사용	반송조치
10월 8일	폴란드	인 도	냉동 새우에 비승인 물질 사용 E500–sodiumcarbonates	반송조치
10월 4일	스페인	에콰도르	토마토 소스 정어리 캔의 가짜 검역증명서	폐기처분
10월 3일	이탈리아	알제리	포기(porgy–도미과)에서 mercury (1.3 mg/kg – ppm) 검출	공식적 보류
10월 2일	영 국	우크라이나	우유 가루의 포장 결함	반송조치
10월 2일	네덜란드	중 국	비승인된 유전자 조작 국수	공식적 보류
10월 2일	폴란드	아제르바이잔	헤이즐넛에서 aflatoxins (B1 = 47.81; Tot. = 51.55 μg/kg – ppb) 검출	반송조치

날 짜	검역국	원산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0월 2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평지씨앗(rapeseeds)에서 진드기로 인한 비정상적인 냄새발생	반송조치
10월 2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해바라기 기름의 포장 상태 불량 – 벌크 포장 운송	반송조치
10월 2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평지씨앗(rape seeds)에 진드기 검출 (33 /kg)	반송조치
10월 1일	네덜란드	중 국	새우 계란면에서 과도한 aluminium (15.6 mg/kg – ppm) 검출	수입 비승인
10월 1일	영 국	방글라데시	구장나무잎(paan leaves)에서 Salmonella spp. (presence /25g) 검출	폐기처분
10월 1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평지씨앗(rape seeds)에서 죽은 진드기 (11 /kg) 로 인한 비정상적인 발생	반송조치
10월 1일	영 국	방글라데시	구장나무잎(paan leaves)에서 Salmonella spp. (presence /25g) 검출	폐기처분
10월 1일	영 국	방글라데시	구장나무잎(paan leaves)에서 Salmonella spp. (presence /25g) 검출	폐기처분
10월 1일	포르투갈	중 국	조류(algae)에서 과도한 aluminium (280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10월 1일	포르투갈	중 국	조류(algae)에서 과도한 aluminium (272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10월 1일	포르투갈	중 국	조류(algae)에서 과도한 aluminium (153 mg/kg – ppm) 검출	폐기처분
10월 1일	폴란드	우크라이나	평지씨앗(rape seeds)에 진드기 검출	반송조치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시사점

○ 검역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분류해 보면, 곰팡이균의 일종인 aflatoxins의 검출, 비승인 색소의 사용, 제품의 부패, 포장손상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특히 aflatoxins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지역에서 더욱 엄격하게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업체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곰팡이 및 식중독 균

- 건조 과정을 거치는 농산물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곰팡이 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건조하거나 제습제 첨가 등의 사전조치가 필요
- 수산물 및 농산물 중 살모넬라의 감염이 높은 제품들은 수출이전에 테스트를 실시, 제품의 살모넬라 감염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농약

- 유럽연합에서 승인하고 있는 농약과 승인 농약별 허용 기준치들을 사전에 숙지, 사용하여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콜드체인의 파열

- 냉장 및 냉동 컨테이너의 경우, 잘못된 온도조절로 콜드체인이 파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콜드체인의 파열은 제품의 부패와 위생상태 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유럽연합에서는 식품의 위생과 보관온도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더욱 엄격함

Ⅱ. '12년 11월 검역 불합격 사례

□ '12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유럽 내에서 검역 불합격 문제 사례와 조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 '12년 11월 검역에서 문제가 된 한국 사례는 아래와 같이 한 건 검색됨

일/월	검 역 국	원 산 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29/11	포르투갈	한국	한국산 인삼가루의 방사선처리 살균에 대한 레이블 부재	폐기처분

□ 2012년 11월 검역 불합격 사례

일/월	검 역 국	원 산 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30/11	이탈리아	중국	찻잎에서 acetamiprid(0.29mg/kg-ppm) 검출	수입비승인
30/11	룩셈브르크	중국	다이어트식품에 비승인물질인 sibutramine와 phenolphthalein 검출	폐기처분
30/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3.3;Tot.=11.4μg/kg-ppb) 검출	압류조치
30/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9.8;Tot.=25.5/Tot.=10.2μg/kg-ppb) 검출	압류조치
30/11	이탈리아	스페인	냉동 황새치 swordfish에서 mercury(1.36mg/kg-ppm) 검출	반송조치

일/월	검 역 국	원 산 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30/11	이탈리아	스페인	냉동 슬라이스 황새치에서 mercury(1.29mg/kg-ppm) 검출	폐기처분
29/11	포르투갈	한국	한국산 인삼가루의 방사선처리 살균에 대한 레이블 부재	폐기처분
29/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2.1;Tot.=2.6/B1=2.5;Tot.=9.3μg/kg-ppb) 검출	공식적보류
29/11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건포도에서 ochratoxinA(43.57+-14.81μg/kg-ppb) 검출	반송조치
29/11	프랑스	터키	건무화과에서 aflatoxins(B1=13.1;Tot.=56.5μg/kg-ppb) 검출	반송조치
29/11	프랑스	터키	건무화과에서 aflatoxins(B1=0.5;Tot.=4.0/B1=4.0;Tot.=4.1μg/kg-ppb) 검출	반송조치
28/11	핀란드	이스라엘	포멜로에서 methidathion(0.17mg/kg-ppm) 검출	압류조치
28/11	영국	인도	오크라(okra)에서 비승인물질인 diafenthiuron(0.03mg/kg-ppm) 검출	폐기처분
28/11	프랑스	인도	오크라(okra)에서 profenofos(1.3mg/kg-ppm)와 acetamiprid(0.68mg/kg-ppm) 검출	폐기처분
28/11	영국	인도	오크라(okra)에서 monocrotophos(0.10mg/kg-ppm) 검출	폐기처분
28/11	영국	인도	오크라(okra)에서 spiromesifen 검출	수입비승인
28/11	프랑스	인도	커리잎에서 chlorpyriphos-ethyl (0.14mg/kg-ppm) 검출	폐기처분
28/11	프랑스	태국	가지에서 tetradifon(0.03mg/kg-ppm) 검출	폐기처분
28/11	프랑스	인도	신선 오크라에서 methamidophos(0.062mg/kg-ppm)와 acephate(0.42mg/kg-ppm) 검출	폐기처분
28/11	프랑스	인도	신선 오크라에서 acephate(0.067mg/kg-ppm) 검출	폐기처분
28/11	덴마크	태국	신선 코리앤더 (coriander/고수풀)에서 Salmonellaspp.(present/25g)검출	폐기처분
28/11	영국	일본	냉동 그레이터앰버잭(greateramberjack)에서 carbonmonoxidetreatment(5.5mg/kg-ppm) 검출	수입비승인
27/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33.2;Tot.=34.6μg/kg-ppb) 검출	공식적보류
27/11	프랑스	인도	커리잎에서 chlorpyriphos-ethyl(0.4mg/kg-ppm) 검출	폐기처분
27/11	독일	중국	다이어트커피에서 비승인 물질인 phenolphthalein(1090;1000mg/kg-ppm) 검출	수입비승인

일/월	검 역 국	원 산 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27/11	네덜란드	중국	포멜로(pomelos)에서 triazophos(0.045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27/11	이탈리아	튀니지	광귤(bitteroranges) 의 곰팡이 감염	반송조치
27/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16.0;Tot.=34.0/B1=46.8;Tot.=54.1/B1=39.9;Tot.=41.3μg/kg-ppb) 검출	수입비승인
27/11	이탈리아	이집트	껍질이 있는 땅콩에서 aflatoxins (B1=110;Tot.=119,5μg/kg-ppb) 검출	반송조치
27/11	이탈리아	중국	냉동 메갈로돈상어 (sharkfillets/Carchroclesmegalodon) 필렛의 라벨링 부정확	폐기처분
27/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8,2;Tot.=15,6μg/kg-ppb) 검출	공식적보류
27/11	스페인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47.7;Tot.=51.05μg/kg-ppb) 검출	반송조치
26/11	덴마크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24;Tot.=45μg/kg-ppb) 검출	수입비승인
26/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3,9;Tot.=14,4μg/kg-ppb) 검출	공식적보류
26/11	독일	인도	오크라에서 monocrotophos(0.03mg/kg-ppm) 와 acephate(0.03mg/kg-ppm) 검출	수입비승인
26/11	에스파냐	인도	연육(surimisticks)에서 비승인색소인 E160b-annato/bixin/norbixin 검출	반송조치
26/11	이탈리아	튀니지	대합(Tapesdecussatus)의 대장균 농도가 Escherichiacoli(2200MPN/100g) 높음	수입비승인
26/11	폴란드	우크라이나	해바리기씨에서 비정상적인 냄새와 함께 벌레 검출	반송조치
26/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9.0;Tot.=9.5μg/kg-ppb) 검출	수입비승인
26/11	영국	중국	녹차에서 buprofezin(0.21mg/kg-ppm), acetamiprid(0.24mg/kg-ppm), imidacloprid(0.16mg/kg-ppm), fipronil(0.07mg/kg-ppm) 그리고 수입 비승인 물질인 isoprocarb(0.03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26/11	영국	이집트	신선 딸기에서 oxamyl(0.04mg/kg-ppm) 검출	폐기처분
26/11	영국	인도	커리잎에서 수입 비승인 물질인 diafenthiuron 검출	폐기처분
26/11	영국	인도	신선 오크라에서 dimethoate(0.14mg/kg-ppm) 검출	수입비승인

일/월	검 역 국	원 산 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26/11	프랑스	터키	유기농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2,2;Tot.=2,2/B1=257,6;Tot.=288,7/㎍/kg-ppb) 검출	공식적보류
23/11	노르웨이	태국	참치캔의 부적합한 열처리 가공	반송조치
23/11	스페인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6.55;Tot.=6.55㎍/kg-ppb) 검출	반송조치
23/11	독일	파푸아 뉴기니	참치(in oil) 잘못된 포장으로 부식됨	수입비승인
23/11	불가리아	인도	넛맥가루(groundnutmeg)에서 aflatoxins(B1=152;Tot.=162,3㎍/kg-ppb) 검출	공식적보류
23/11	독일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6.9;Tot.=7.2㎍/kg-ppb) 검출	반송조치
23/11	에스파냐	일본	김에서 곰팡이 발견	폐기처분
22/11	독일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8.72;Tot.=14.85㎍/kg-ppb) 검출	반송조치
22/11	덴마크	마우리타니아	어분에서 장내세균 Enterobacteriaceae 농도가(20;90;150CFU/g) 높음	당국에통보
22/11	독일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10.9;Tot.=16.5㎍/kg-ppb) 검출	반송조치
22/11	독일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4.9;Tot.=8.6㎍/kg-ppb) 검출	반송조치
22/11	독일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6.33;Tot.=12.77) 검출	반송조치
22/11	벨게에	이란	피스타치오에서 aflatoxins(B1=711;Tot.=823㎍/kg-ppb) 검출	폐기처분
22/11	폴란드	우크라이나	평지씨앗(rapeseeds)의 진드기 감염	반송조치
22/11	독일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2.3;Tot.=4.4/B1=5.9;Tot.=9.6㎍/kg-ppb) 검출	반송조치
21/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7,4;Tot.=14,4㎍/kg-ppb) 검출	반송조치
21/1	그리스	인도네시아	건 코코넛에서 Salmonella Senftenberg(presence/25g) 와 Salmonellaspp.(presence/25g) 검출	반송조치
21/11	독일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11.68;Tot.=22.65㎍/kg-ppb) 검출	반송조치
21/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14.3;Tot.=15㎍/kg-ppb) 검출	수입비승인

일/월	검 역 국	원 산 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20/11	프랑스	중국	껍질땅콩에서 aflatoxins(B1=13,2;Tot.=16,1μg/kg-ppb) 검출	공식적보류
20/11	에스파냐	인도	생강의 감각 수용성 특징변형 (퀴퀴한 냄새 검출)	반송조치
20/11	폴란드	우크라이나	평지씨앗(rapeseeds)의 진드기감염	반송조치
20/11	프랑스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6.0;Tot.=7.8μg/kg-ppb) 검출	폐기처분
20/11	독일	인도	오크라에서 acephate(0.08mg/kg-ppm) 검출	당국에통보
20/11	독일	태국	작은 크기의 컵젤리에서 비승인 식품 첨가물인 E407 검출	폐기처분
19/11	에스파냐	태국	타피오카가루(tapiocaflour)에서 다량의 sulphite(125mg/kg-ppm) 검출	반송조치
19/11	영국	인도	신선 오크라에서 thiodicarb(0.04mg/kg-ppm) 검출	폐기처분
19/11	폴란드	아르헨티나	땅콩에서 비정상적인 냄새 검출	반송조치
19/11	에스파냐	에콰도르	냉동 어육의 잘못된 온도 조절로 콜드 체인 파열	수입비승인
19/11	폴란드	우크라이나	평지씨앗에서 살아있는 곤충 검출	반송조치
19/11	에스파냐	인도네시아	냉동 참치의 잘못된 온도 조절로 콜드 체인 파열	수입비승인
19/11	폴란드	중국	건 돼지 오줌보 (driedpigbladders)에서 곰팡이 검출	반송조치
19/11	영국	인도	오크라에서 ethion(0,32mg/kg-ppm) 검출	폐기처분
19/11	에스파냐	미국	알라스카 팔럭 (Alaskapollack)의 잘못된 온도 조절로 콜드 체인 파열	수입비승인
19/11	영국	인도	냉장 reef cod의 검역 증명서 부재	폐기처분
16/11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해바라기씨박에서 Salmonellaspp.(presence/25g) 검출	당국에통보
16/11	영국	이집트	신선 피망에서 oxamyl(0.14mg/kg-ppm)와 thiophanate-methyl(0.19mg/kg-ppm) 검출	폐기처분
16/11	루마니아	중국	포멜로에서 imazalil(9,56mg/kg-ppm) 검출	반송조치
16/11	프랑스	인도	커리잎에서 chlorpyriphos-ethyl (0.21mg/kg-ppm) 검출	폐기처분
16/11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유채 깻묵에서 SalmonellaDerby (presence/25g) 검출	반송조치
16/11	영국	나이지리아	허니빈(honeybeans)에서 비승인 물질인dichlorvos(0,35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16/11	에스파냐	인도네시아	냉동 참치의 잘못된 온도 조절로 콜드 체인 파열	공식적보류
16/11	영국	인도	신선 오크라에서 triazophos (0.06mg/kg-ppm) 검출	폐기처분
16/11	영국	인도	신선 오크라에서 methamidophos (0.04mg/kg-ppm)와 acephate(0.30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일/월	검 역 국	원 산 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6/11	프랑스	인도	커리잎에서 acephate(0.31mg/kg-ppm), triazophos(0.29mg/kg-ppm), tebuconazole(0.19mg/kg-ppm), hexaconazole(0.14mg/kg-ppm), myclobutanil(0.042mg/kg-ppm) 와 fipronil(0.11mg/kg-ppm) 검출	폐기처분
16/11	프랑스	도미니카 공화국	가지에서 dimethoate (0.097mg/kg-ppm) 검출	폐기처분
16/11	프랑스	인도	냉장 오크라에서 triazophos (0.049mg/kg-ppm) 검출	폐기처분
15/11	에스파냐	브라질	냉동 닭고기에서 Salmonella enteritidis (presence/25g) 검출	폐기처분
15/11	독일	브라질	껍질 브라질 넛트의 검역 증명서 부재	반송조치
15/11	독일	브라질	껍질 브라질 넛트의 검역 증명서 부재	반송조치
14/11	영국	인도	신선야채에서monocrotophos(0.04mg/kg-ppm),acephate(0.05mg/kg-ppm)andtriazophos(0.03mg/kg-ppm)검출	폐기처분
14/11	영국	인도	야채에서 methamidophos(0.03mg/kg-ppm), monocrotophos(0.03mg/kg-ppm) andacephate(0.26mg/kg-ppm) 검출	폐기처분
14/11	아일랜드	중국	라면에서 다량의 알루미늄 aluminium(21mg/kg-ppm) 검출	폐기처분
14/11	아일랜드	중국	라면에서 다량의 알루미늄 aluminium(15mg/kg-ppm) 검출	폐기처분
14/11	덴마크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11;Tot.=28㎍/kg-ppb) 검출	반송조치
14/11	이탈리아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4.0;Tot.=6.1㎍/kg-ppb) 검출	당국에통보
14/11	에스파냐	아이슬란드	냉동 오징어의 감각 수용성 특징변질 (강력한 가솔린 냄새)	물리적/화학적처리
14/11	덴마크	터키	건 과일 페이스트칵테일에서 aflatoxins(B1=3.1;Tot.=4.1㎍/kg-ppb) 검출	수입 비승인
13/11	영국	인도	야채 믹스에서 acephate(6mg/kg-ppm)와 ethion(7mg/kg-ppm) 검출	폐기처분
13/11	노르웨이	태국	참치캔의 부적절한 열처리 가공	반송조치
13/11	에스파냐	모로코	냉동 한치 / 잘못된 온도 조절로 콜드 체인 파열	수입비승인
13/11	프랑스	태국	가지에서 carbendazim (4.8mg/kg-ppm) 검출	폐기처분
13/11	프랑스	인도	커리잎에서 chlorpyriphos (0.25mg/kg-ppm)와 triazophos(0.067mg/kg-ppm) 검출	폐기처분

일/월	검 역 국	원 산 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13/11	영국	방글라데시	구장나무잎 (paanleaves)에서 Salmonella spp.(presence/25g) 검출	폐기처분
13/11	폴란드	우크라이나	평지씨앗(rapeseeds) 의 진드기 감염	반송조치
12/11	에스파냐	태국	타피오카가루 (tapiocaflour)에서 다량의 sulphite(125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12/11	폴란드	우크라이나	평지씨앗(rapeseeds)의 진드기 감염(10/kg)	반송조치
12/11	에스파냐	일본	김에서 곰팡이 발견	폐기처분
12/11	영국	인도	혼합 야채에서 acephate (0.07mg/kg-ppm) 검출	당국에통보
12/11	영국	인도	커리잎에서 profenofos (0.21mg/kg-ppm) 검출	폐기처분
09/11	독일	인도	냉동 어육에서 금지된 성분인 nitrofuran(metabolite) furazolidone(AOZ) (7.2μg/kg-ppb) 검출	수입비승인
09/11	에스파냐	도미니카 공화국	비 위생적인 상태의 초콜릿	반송조치
09/11	에스파냐	베네수엘라	냉동 어육 / 잘못된 온도 조절로 콜드 체인 파열	수입비승인
09/11	독일	터키	볶은 헤이즐넛에서 aflatoxins (Tot.=17.98μg/kg-ppb) 검출	반송조치
09/11	벨기	이집트	석류에서 lambda-cyhalothrin (0.06mg/kg-ppm) 검출	수입비승인
09/11	영국	인도	신선 오크라에서 methamidophos(0.03mg/kg-ppm) 와 acephate(0.18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09/11	포르투갈	이집트	해바라기씨에서 aflatoxins (B1=0,09mg/kg-ppm) 검출	반송조치
09/11	영국	인도	신선 오크라에서 pesticideresidues (acephate0.36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09/11	이탈리아	중국	가는 쌀국수 (rice vermicelli)의 검역 증명서 부재	수입비승인
09/11	이탈리아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9,1;Tot.=36,1μg/kg-ppb) 검출	반송조치
09/11	그리스	인도	거피한 참깨에서 Salmonella Agona(presence/25g), Salmonella Mbandaka(presence/25g) 와 Salmonellaspp.(presence/25g) 검출	반송조치
09/11	에스파냐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5,30+/-1,52;Tot.=5,91+/-1,68/B1=37,74+/-6,34;Tot.=48,22+/-7,62μg/kg-ppb) 검출	반송조치
09/11	독일	중국	비 승인된 재료인 인삼잎과 승화물 검출	반송조치
08/11	포르투갈	중국	비 승인된 유전자 변형 쌀이 들어간 감자 라면	폐기처분
08/11	에스파냐	베트남	대합 조개의 가짜 검역 증명서	수입비승인
08/11	말타	터키	건무화과에서 aflatoxins(B1=23;Tot.=27.7μg/kg-ppb) 검출	수입비승인

일/월	검 역 국	원 산 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08/11	독일	중국	비 승인된 dongling tea	반송조치
08/11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차 (lindenand camomile)에서 비 승인물질인 prometryn(0.56mg/kg-ppm) 검출	폐기처분
08/11	불가리아	터키	신선 피망에서 formetanate(0.42mg/kg-ppm) 검출	압류조치
08/11	프랑스	중국	녹차에서 buprofezin(0.14mg/kg-ppm)와 imidacloprid(0.056mg/kg-ppm) 검출	반송조치
08/11	영국	인도	오크라에서 acephate(overMRL) 검출	수입비승인
08/11	말타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 (B1=4;Tot.=4.6/B1=91.8;Tot.=96.7μg/kg-ppb) 검출	반송조치
08/11	영국	인도	커리잎에서 profenofos (0.58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08/11	독일	터키	껍질 피스타치오에서 aflatoxins(B1=15.1;Tot.=17.8μg/kg-ppb) 검출	반송조치
07/11	영국	세네갈	땅콩에서 aflatoxins(B1=0.76+/-0.21/B1=0.085+/-0.023/B1=0.43+/-0.12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07/11	영국	이란	피스타치오의 검역 증명서 부재	폐기처분
07/11	폴란드	우크라이나	겨자씨의 진드기 감염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냄새	반송조치
07/11	독일	우크라이나	신선 살구버섯의 radioactivity (794BQ/kg) 수치 높음	반송조치
07/11	이탈리아	터키	껍질잣에서 Salmonellaspp. 검출	반송조치
07/11	에스파냐	모로코	냉동 정어리 / 잘못된 온도 조절로 콜드 체인 파열	반송조치
07/11	네덜란드	중국	비승인 유전자 조작 쌀로 만든 (CryAb/CrylAc) 오리엔탈 믹스	수입비승인
07/11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유채 깻묵에서 Salmonella(presence/25g) 검출	반송조치
07/11	이탈리아	터키	껍질잣에서 Salmonellaspp. 검출	반송조치
07/11	네덜란드	인도	땅콩에서 aflatoxins(B1=20;Tot.=22μg/kg-ppb) 검출	수입비승인
07/11	에스토니아	벨라루스	유채깻묵에서 Salmonella(presence/25g) 검출	반송조치
07/11	영국	인도	신선오크라에서 acephate(0.13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07/11	영국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6.1;Tot.=6.4μg/kg-ppb) 검출	반송조치
07/11	이탈리아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8,1±2,7;Tot.=6,5±2,7μg/kg-ppb) 검출	수입비승인
07/11	영국	터키	헤이즐넛에서 aflatoxins(B1=22.4;Tot.=45.1/B1=3.4;Tot.=9.8μg/kg-ppb) 검출	반송조치
07/11	영국	인도	신선 오크라에서 methamidophos(0.05mg/kg-ppm), acephate(0.42mg/kg-ppm) 그리고 acetamiprid(0.05mg/kg-ppm) 검출	공식적보류

일/월	검 역 국	원 산 지	불합격 사유	후속조치
07/11	이탈리아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5,8;Tot.=13,7μg/kg-ppb) 검출	반송조치
06/11	에스파냐	인도	냉동 이미테이션 게 스틱에서 비승인색소인 E160b-annato / bixin / norbixin(Indicatedinlabelling) 사용	수입비승인
06/11	그리스	터키	가공 처리한 피망의 잘못된 라벨링 (원산지표시잘못)	반송조치
06/11	불가리아	터키	냉장 피망에서 carbendazim (0,52+/-0,1mg/kg-ppm) 검출	압류조치
06/11	스웨덴	인도	생강의 포장 결함과 곤충 검출	공식적보류
06/11	리투아니아	터키	석류에서 acetamiprid(0,048+/-0,024mg/kg-ppm) 검출	반송조치
06/11	벨기에	중국	비 승인된 유전자 조작성분의 (presenceofp35S,CrylA(b))고추 쌀 과자	반송조치
06/11	스웨덴	인도	피망의 포장 결함, 곤충 검출	수입비승인
06/11	스페인	인도네시아	냉동 가당랑어 / 잘못된 온도 조절로 콜드 체인 파열	수입비승인
06/11	스페인	중국	냉동훈제 뼈 없는 오리의 가짜 검역 증명서	폐기처분
06/11	영국	인도	신선 오크라에서 triazophos(0.22mg/kg-ppm) 와 acetamiprid(0.05) 검출	수입비승인
06/11	덴마크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3,2;Tot.=9,1μg/kg-ppb) 검출	반송조치
05/11	영국	인도	커리잎에서 endosulfan(0,53mg/kg-ppm), methamidophos(0,03mg/kg-ppm), acephate(0,27mg/kg-ppm), profenofos(9,5mg/kg-ppm), ethion(1,3mg/kg-ppm), triazophos(0,95mg/kg-ppm) 그리고 bifenthrin(0,6mg/kg-ppm) 검출	폐기처분
05/11	덴마크	터키	건 과일 믹스에서 aflatoxins(B1=3,5μg/kg-ppb) 검출	반송조치
05/11	영국	이집트	냉장 피망에서 propiconazole(0,06mg/kg-ppm) 검출	수입비승인
05/11	이탈리아	터키	건 무화과에서 aflatoxins(B1=8,9±3,9;Tot.=12,6±4,1μg/kg-ppb) 검출	수입비승인

자료 : 유럽 연합 식품 및 사료 긴급 경보 시스템 RASFF 웹사이트

□ 시사점

○ 검역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살펴보면, 곰팡이균의 일종인 아플라톡신(aflatoxins) 검출, 농약검출, 비승인 물질의 검출, 냉장 및 냉동 컨테이너의 부적절한 온도 조절 등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아플라톡신(aflatoxins) 검출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 지역에서 더욱 엄격하게 검사를 하고 있어 아플라톡신이 주로 검출되는 마른 고추 및 고춧가루, 마른 나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은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 또한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유럽 연합에서 승인하고 있는 농약인지, 기준치 허용 잔여량은 얼마인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에서는 살모넬라 등 각종 미생물균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냉장 및 냉동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수출시 적절한 온도 조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방사선 조사법 (살균법)

– 국내에서는 식품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 조절의 목적으로 식품에 저장된 선량 이하의 방사선으로 1회만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방사선조사 식품은 “조사처리”(treated with radiation, treated by irradiation)라고 문구로 표시하거나 마크를 직경 5cm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여야 함

주요국 수출현안 모니터링
- 러시아·유럽

발 행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발 행 일 : 2012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양재동 aT센터)
문 의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02)6300-1408

※ 우리 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 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 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KATI(www.kati.net)〉자료실〉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